

감 사 원

주의요구·통보

제 목 국내여비(철도운임) 지급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지식경제부
관 계 기 관 한국기계연구원 등 13개 정부출연연구기관¹⁾
내 용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연구원에서는 연구원 임직원이 공무 국내출장을 할 때에는 각 연구원 여비지급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기업체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임직원이 출장 등 업무수행 목적으로 고속철도, 새마을호 등 철도를 이용할 경우 해당 기관의 이용실적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철도운임을 할인해 주는 철도이용계약수송(이하 “단체할인”이라 한다)제도와 주중²⁾ 철도이용에 대해서는 기준운임인 주말 철도운임보다 일정비율만큼 철도운임을 할인해 주는 탄력운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 국내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단체할인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단체할인계약을 맺어 할인운임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한국철도공사와 단체할인계약을 맺고 시행 중인 경우에는 할인기준 운임을 적용하는 등 단체할인제도와 탄력운임제도를 이용하여 공무출장에 따른 국

1) 재료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탄력운임제도의 주중기준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적용됨

내여비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단체할인계약 미체결에 따른 예산 미절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3개 연구원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단체할인계약을 맺고, 그 계약 내용에 따른 할인운임 기준으로 철도운임을 지급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2011년 12월 현재까지 한국철도공사와 단체할인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3개 연구원에서 단체할인계약을 맺지 않고 정상 철도운임을 지급함으로써 [별표]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원의 철도운임 지급 현황”과 같이 2010. 1. 1.부터 2011. 11. 30. 사이에 단체할인계약을 맺었을 경우와 비교할 때 계 642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다.

2. 단체할인계약을 체결하고도 정상운임을 지급하여 예산 낭비

한국기계연구원 등 10개 연구원에서는 이미 한국철도공사와 단체할인계약을 맺어 임직원으로 하여금 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서도 임직원의 출장비 지급 시 단체할인계약에 따른 할인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정상 철도운임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기계연구원 등 10개 연구원에서 [별표]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원의 철도운임 지급 현황”과 같이 2008. 1. 1.부터 2011. 11. 30. 사이에 단체할인계약에 따른 할인운임을 지급하였을 경우와 비교할 때 계 1,795백만 원만큼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다.

3. 주중출장 시 주말요금을 지급하여 예산 낭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3개 연구원에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주중(월~목요

일)철도운임을 기준운임(주말 철도운임)보다 할인해 주는 탄력운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의 주중 출장 시에 주중 철도운임을 지급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임직원의 주중 출장 시에도 기준운임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3개 연구원에서 [별표]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원의 철도운임 지급 현황”과 같이 2008. 1. 1.부터 2011. 10. 13. 사이에 주중 출장에 대하여 주중 철도운임을 지급하였을 경우와 비교할 때 계 359백만원만큼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등 3개 연구원 원장³⁾은

[통보] 국내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한국철도공사의 단체할인제도와 탄력운임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계연구원장 원장 등 10개 연구원 원장⁴⁾은

[주의]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와 맺은 단체할인계약에도 불구하고 정상 철도운임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등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등 3개 연구원 원장⁵⁾은

[주의] 앞으로 주중 출장 시 주말기준 철도운임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등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4)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재료연구소 소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안전성평가연구소 소장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별표 1]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원의 철도운임 지급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번	기관명	단체계약 체결 시 예산절감 추정액 ¹⁾			단체할인계약에 따른 할인운임 지급 시 예산절감액 추정액 ²⁾			주중 출장 시 주중 운임 지급 시 예산절감 추정액 ³⁾			
		단체할인 계약체결	정상 운임액	할인운임 계산액	예산절감 추정액	정상 운임액	할인운임 계산액	예산절감 추정액	주말 운임액	주중 운임액	예산절감 추정액
1	한국기계연구원	○				1,131	884	247	825	790	35
2	재료연구소	○				90	75	15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1,436	1,113	323			
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1,129	848	281			
5	한국식품연구원	○				20	17	3			
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416	325	91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1,897	1,451	446			
8	한국전기연구원	○				565	461	104			
9	한국화학연구원	○				918	693	225			
10	안전성평가연구소	○				241	181	60			
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X	3,283	2,730	553				4,795	4,494	301
12	국가보안기술연구소	X	250	216	34				250	216	34
1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X	321	266	55						
계			3,854	3,212	642	7,843	6,048	1,795	6,015	5,656	359

- 주: 1. 단체할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단체할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3개 연구원)
 2. 단체할인계약 체결 후 정상운임을 지급하였으나 단체할인운임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한 경우(10개 연구원)
 3. 주중 출장 시 주말 운임을 지급하였으나 주중 운임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한 경우(3개 연구원)
 4.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4개 연구원 중 2010. 1. 1. 신설된 세계김치연구소를 제외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연구원의 직무 관련 대외활동에 대한 지도 · 감독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지식경제부
관 계 기 관 ① 산업기술연구회 ②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5개 정부출연연구기관¹⁾
내 용

산업기술연구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산업기술연구회 정관」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무관련 대외활동 관리 업무 등을 지도 · 감독하고 있다.

1. 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한 복무관리 부적정

위 연구회 소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5개 연구원²⁾에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과 민간 산업체에 제공하는 기술자문 등 기술지원 사업을 연구원 기능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기술자문 등 대외활동을 하게 하면서 부패방지 등을 목적으로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소속 직원이 기술자문 등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원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연구원에서는 직원들이 연구원에 사전 신고나 승인 없이 기술자문 등 대외활동을 임의로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위 5개 연

1)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2)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구원 소속 직원들의 대외활동 사전 승인 여부 등 연구원의 대외활동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별표 1] “연구원 소속직원들의 대외활동 현황”과 같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5개 연구원 소속직원 1,952명(연구인력 2,867명의 68.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총 18,326건의 대외활동을 수행하면서 63.8%인 11,693건은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위 5개 연구원에서는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2. 연구원의 직무관련 대외활동 대가 관리 부적정

한편 연구기관 직원들이 근무시간 등을 이용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 업무의 충실한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자문 등을 위해 연구원의 시설 등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패와 관련될 수도 있으므로 대외활동 대가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처리·배분하기 위한 기준도 같이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³⁾

그런데 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5개 연구원⁴⁾에서는 자문료 등 직원들의 대외활동에 따른 수입의 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패방지 차원에서 임직원의 대외 강연 등에 따른 과도한 대가 수수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해당 규정에 따라 단순히 그 수행사실만을 신고한 채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지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대외활동의 일부인 기술자문에 대해 「기술자문 지침」(2006. 2. 2. 한국전기연구원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소속직원이 산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체 현장의 애로기술에 대한 실험분석, 기술지도 및 조언 등을 수행할 경우 위 연구원에

3) 한국전기연구원의 「인사규정」 제30조에서도 직원들이 보수를 목적으로 타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면서 타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와 같거나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소속직원들의 대외활동 대가처리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이 이러한 인사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함

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서 요청자와 계약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연구원에서 개발·보유한 기술의 자문 제공료 등 포함)를 공제한 나머지를 기술자문을 수행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전기연구원을 제외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⁵⁾ 소속 직원들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대외활동 수입처리 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경우 직원 229명이 2년 동안 4,761건의 기술자문 등 대외활동을 수행하고 17억여 원을 자문료 등으로 받아 개인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별표 2] “연구원 소속직원 대외활동 대가 현황”과 같이 4개 연구원 소속직원 1,741명(연구직원 2,601명의 66.9%)이 2009년과 2010년에 총 15,741건의 기술자문 등 업무 관련 대외활동을 수행하고 대가 76억여 원을 소속 기관이 아닌 개인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원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근무시간 등을 이용하여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자문료 등을 받고 자문활동을 하는 등 영리행위를 하여도 수입금 전체를 개인이 차지하게 되어 있어 이를 전혀 기관수입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등 5개 연구원의 원장⁶⁾은

[주의]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자체 대외활동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이 기술자문 등 대외활동 시 사전신고·승인 등 절차를 준수하도록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은 여러 대외활동 가운데 기술자문에 대해서는 대가처리에 대한 자체지침을 두고 있어 점검대상에서 제외

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한국지질연구원 원장,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은

[통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산업기술연구회 정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원 직원들의 대외활동 대가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연구원 소속직원들의 대외활동 현황(2009년 및 2010년)

(단위: 명, 건, %)

구 분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한국기계 연구원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한국전기 연구원	계
대외활동인원 (활동가능 연구인력)	229 (295)	176 (253)	1,120 (1,716)	216 (337)	211 (266)	1,952 (2,867)
대외활동건수	4,761	1,462	7,202	2,316	2,585	18,326
신고 건수	2,589	690	879	1,336	1,139	6,633
미신고 건수	2,172	772	6,323	980	1,446	11,693
미신고 비율	45.6	52.8	87.8	42.3	55.9	63.8

주: '활동가능 연구인력'은 2009년과 2010년에 활동한 연구직원 수를 평균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연구원 소속직원 대외활동 대가 현황

(단위: 건, 천 원)

구 분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한국기계 연구원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계	
계	건수	4,761	1,462	7,202	2,316	15,741	
	금액	1,784,080	884,657	3,965,333	1,034,680	7,668,750	
2 0 0 9 년	소계	건수	2,280	709	3,797	1,083	7,871
		금액	820,082	426,870	1,982,506	461,512	3,690,970
	자문	건수	699	125	932	328	2,084
		금액	279,819	112,048	561,442	188,458	1,141,767
	심사·평가	건수	615	231	742	319	1,907
		금액	166,531	105,664	337,633	85,444	695,272
	기타	건수	966	353	2,123	436	3,878
		금액	373,732	209,158	1,083,431	187,610	1,853,931
2 0 1 0 년	소계	건수	2,481	753	3,405	1,233	7,874
		금액	963,998	457,787	1,982,827	573,168	3,977,780
	자문	건수	789	123	716	377	2,005
		금액	352,898	102,396	507,571	218,659	1,181,524
	심사·평가	건수	737	254	799	409	2,199
		금액	214,627	128,540	364,079	128,895	836,141
	기타	건수	955	376	1,890	447	3,668
		금액	396,473	226,851	1,111,177	225,614	1,960,115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연구개발비 집행·정산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기계연구원

관 계 기 관 한국기계연구원

내 용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1. 6. 24. 대통령령 제22977호. 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문기관과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정 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구원 고유분야 연구개발사업인 주요사업을 수행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예산집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예산 집행·결산을 하고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공동관리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는 간접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9조 제8항 관련 별표 2의 2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등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원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지원인력 급여를 인건비에 계상하였거나 지급한 경우 이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연구원에서 사무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간접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인건비로 계상·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공동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지원인력 인건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계액에 연구원별로 고시된 일정비율¹⁾을 곱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위 연구원에서도 연구과제별로 고시된 일정비율 한도대로 간접비를 계상하고 있으므로 지원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위 연구원에서는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지원인력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급여 10억여 원(2008년 342,731,423원, 2009년 371,182,908원, 2010년 304,632,322원 계 1,018,546,653원²⁾)을 간접비가 아닌 외부인건비로 계상·집행하면서 [표]와 같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위 3년간 10억여 원 만큼을 부당하게 경상운영비 절감액³⁾으로 인정받아 능률성과급⁴⁾ 4억 6,898만여 원을 과다 지급하게 되었다.

[표] 파견근로자 인건비 부당 계상 및 능률성과급 과다 지급 내역

(금액단위: 원)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파견근로자 인건비 부당 계상액(㉑)	342,731,423	371,182,908	304,632,322	1,018,546,653
당초 경상운영비 절감액(㉒)	638,000,000	642,000,000	1,437,000,000	2,717,000,000
정당 경상운영비 절감액 ¹⁾ (㉓=㉒-㉑)	295,268,577	270,817,092	1,132,367,678	1,698,453,347
능률성과급 지급률 (㉔)	43%	45%	50%	
당초 능률성과급 ²⁾ (㉕)	276,000,000	289,000,000	719,000,000	1,284,000,000
정당 능률성과급 (㉖=㉓×㉔)	126,965,488	121,867,691	566,183,839	815,017,019
능률성과급 과다 지급액 (㉗=㉕-㉖)	149,034,512	167,132,309	152,816,161	468,982,981

주: 1.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상운영비 절감액

2. 당초 능률성과급 지급액은 실지급액을 기재하였음

자료: 한국기계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은

1) 한국기계연구원의 경우 2010년도 기준 12.62%

2) 정부수탁사업분 135,334,253원, 주요사업분 883,212,400원

3)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는 세출예산서상 경상운영비로 집행되며, 경상운영비 절감액은 능률성과급 재원이 됨

4) 능률성과급은 결산잉여금의 50% 이내에서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고 있으며 능률성과급 지급재원은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인한 결산잉여금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무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의 인건비는 간접
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이를 인건비로 계상·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개발비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